#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65

발의연월일: 2025. 2. 7.

발 의 자: 민형배·양부남·소병훈

김문수・정동영・이개호

박지원 · 안도걸 · 김동아

문정복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제품 중 만 2세 이하의 영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영아용제품 으로 규정해 엄격한 안전관리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제품을 위험성에 따라 분류하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아용제품은 별도로 정의하여 관리하지 않습니다. 만 2세 이하의 영아는 면역체계 등이 미성숙해 유해물질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행법에는 원료 변경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절차에 중대한 미비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어린이제품 중에서 만 2세 이하의 영아가 사용하거나 영아를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을 영아용제품으로 규정하고, 영아용제품은 안전 인증대상어린이제품으로 하여 엄격한 안전관리를 받도록 하려 합니다.

또한, 어린이제품의 원료 또는 제조공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변경신청 또는 안전확인의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거나 공급 자적합성확인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제고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안제2조제9호·제17조제2항·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4항).

#### 법률 제 호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구조· 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것을"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제품을"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영아용제품"이란 어린이제품 중에서 만 2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2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 다.
  - 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영아용제품

제17조제2항 중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2. 제품의 원료 또는 제조공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22조제1항 후단 중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2. 제품의 원료 또는 제조공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2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는 원료 또는 제조 공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34조제3항제3호 중 "제25조제7항을"을 "제25조제8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5조제8항을"을 "제25조제9항을"로 한다.

제43조제3항제21호 중 "제25조제5항을"을 "제25조제6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제25조제6항을"을 "제25조제7항을"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1. (생략) <신 설> 1의2. "영아용제품"이란 어린이 제품 중에서 만 2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2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 용되는 것을 말한다.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9.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 에 해당하는 어린이제품을---명 · 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는 것을 말한다. <신 설> 가. 구조ㆍ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해

<신 설>

10. ~ 13. (생략)

제17조(안전인증 등) ① (생 략)

②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 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 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기 관에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 ~ ① (생 략)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① 안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① ---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 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 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 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영아용제품

10. ~ 13. (현행과 같음) 제17조(안전인증 등) ① (현행과 같음)

2	 				
	 <u>다음</u>	각	호에	해당	하
<u>는</u> -	 				

- 1.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
- 2. 제품의 원료 또는 제조공정 의 변경이 있는 경우
- ③ ~ ① (현행과 같음)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 ·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 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 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 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 ① (생 략) ~ ③ (생 략)

<신 설>

④ ~ ⑧ (생 략)

- <u>다음 각 호에</u>	<u> 해당하는</u>	

- 1.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2. 제품의 원료 또는 제조공정 의 변경<u>이 있는 경우</u>
- ② ~ ① (현행과 같음)
-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 이제품의 제조업자는 원료 또 는 제조공정의 변경이 있는 경 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 ⑤ ~ ⑨ (현행 제4항부터 제8

하까지와 간은)

제34조(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① ㅈ •② (생 략)

- ③ 시·도지사는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 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 할 수 있다.
- 1. 2. (생략)
- 3.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 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을 한 경우
- 4. <u>제25조제8항을</u> 위반하여 공 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 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5. • 6. (생략)

④·⑤ (생 략)

제43조(과태료) ①・② (생 략)

세34조(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3
<u>.</u>
1. • 2. (현행과 같음)
3. <u>제25조제8항을</u>
4. <u>제25조제9항을</u>
5. · 6.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세4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20. (생략)
- 2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와 별도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경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자
- 22.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 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 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 추어 두지 아니한 자

23. ~ 25. (생략)

④ (생 략)

(3)
1. ~ 20. (현행과 같음)
21. 제25조제6항을
21. <u>1. 1. 2011 10 8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u>
_
22. <u>제25조제7항을</u>
23. ~ 2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